

컴포즈커피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 이용계약 일방 해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안 송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조사 결과, (주)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책임자	팀 장	이선희 (02-2110-1550)
		담당자	주무관	김덕희 (02-2110-1532)